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9811

제안연월일: 2021. 4.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564호)	김정호	2020. 7. 3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 회의(2020. 9. 22.)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106006호)	안호영	2020. 12. 1.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1. 2. 17.)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나.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1. 2. 19.) 및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1. 3. 17./2021. 3. 23.)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1. 3.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

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 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 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 사단을 설치함(안 제48조의3 신설).
- 마. 구제급여 신청·결정·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안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 신설).
- 바. 구제급여 지급, 피해 평가 및 조사·연구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함(안 제48조의9 신설).
- 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8조의11신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을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로 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

항

-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직업 환경의학 등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 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제5장의2(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 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

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 (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

- 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1회로 한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 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료비
 - 2. 장애일시보상금
 - 3. 사망일시보상금
 - 4. 장례비
 -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 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

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

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

- 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1. 구제급여의 지급
 -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 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

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 \times 피해자수 $\times \frac{(원인제품사용비율 \times 2.5 + 원인제품판매비율 <math>\times 1)}{3.5}$

-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 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

-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3. 조사단의 단원
-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	제1조(목적)				
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					
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					
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					
의 <u>기준</u> 등에 관한 사항을 규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	<u>해의 구제</u>				
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u>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u>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u>				
	<u>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u>				
	제자매를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	제5조(적용 범위) ①				
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② (생략)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 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
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
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1. ~ 7. (현행과 같음)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
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관한 사항
<u>에 단천 시청</u> 9. (현행 제8호와 같음)
<u>고</u> (건생 세0오퍼 包亩)

②·③ (생략)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⑤ ~ ⑦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2)·(3) (현행과 같음)
- <u>(4)</u>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
 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
 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
 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
 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사람
-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 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 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 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 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 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 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 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 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 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 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 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 상금으로 본다.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

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 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 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주민등록·가족관계 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 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 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 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 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 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②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 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1회로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

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 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u>1. 진료비</u>
- 2. 장애일시보상금
- 3. 사망일시보상금
- 4. 장례비
-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신 설>

<신 설>

<u>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u>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 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 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 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 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 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

- 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 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 <u>우</u>
-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 급받은 경우
-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 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 다.
-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 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 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 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수 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신 설>

<신 설>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 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 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 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 에 관한 사항
-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 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 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 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 경 등에 관한 사항
-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

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 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u>천재지변·전쟁·사</u>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 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 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 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

<신 설>

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 1. 구제급여의 지급
-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필 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 한다)의 지출
-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 제제도를 유지·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 <u>2.</u>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

 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

 상금
-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 급여의 환수금
- <u>5</u>.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

품피해구제분담금

-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 부금
-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①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 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 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 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 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신 설>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 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 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 다.
-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 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 정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 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 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

<신 설>

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 (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이라 장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수 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 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 × 피해자수 (원인제품사용비율 × 2.5 + 원인제품판매비율 × 1) × 3.5

-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제조·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 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 량 중 개별 제조·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 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

<신 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수 있다.

-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 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 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 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워으로 본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신 설>

<신 설>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u>17</u>	및	제48	조의18	3에	따른	살생
물>	제퓓	등피해	구제	케	관한	업무
를	대	통령	청으로	정	하는	바에
叫i	라	운영?	기관의	장	에게	위탁
<u>할</u>	수	있다	<u>•</u>			

제) -----

- 1. 2. (현행과 같음)
- 3. 조사단의 단원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 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 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 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 를 부고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③ 제1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
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